

● 계약직관리세칙(040505)

제정 2002. 12. 9. 시행세칙 제 83호	개정 2006. 9. 15. 시행세칙 제173호	개정 2015. 8. 26. 시행세칙 제414호
개정 2003. 4. 14. 시행세칙 제 93호	개정 2006. 10. 13. 시행세칙 제177호	개정 2016. 6. 1. 세칙 제440호
개정 2003. 10. 15. 시행세칙 제 98호	개정 2007. 1. 29. 시행세칙 제186호	개정 2019. 6. 17. 세칙 제508호
개정 2004. 6. 9. 시행세칙 제119호	개정 2007. 3. 28. 시행세칙 제211호	개정 2020. 7. 29. 세칙 제537호
개정 2004. 11. 8. 시행세칙 제130호	개정 2007. 10. 24. 시행세칙 제234호	개정 2022. 6. 3. 세칙 제609호
개정 2005. 8. 18. 시행세칙 제154호	개정 2009. 3. 27. 시행세칙 제277호	개정 2024. 1. 31. 세칙 제653호
개정 2006. 4. 10. 시행세칙 제167호	개정 2014. 6. 24. 시행세칙 제39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공사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한다)의 채용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13, 07.3.28>

제2조(적용범위) 계약직원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다만, <개정 07.3.28, 14.6.24, 20.7.29>

제3조(정의) “운영부서”라 함은 계약직원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계약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06.4.10>

1. 공사감독계약직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보상전문계약직 - 특급, 고급
3. 일반전문계약직 -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 용지분양전문계약직 - 특급, 고급
5. <삭제 07.10.24>
6. 일반계약직 <신설 20.7.29>

제 2 장 채용 및 전직

제5조(채용형태)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제6조(채용자격)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필요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공사의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분야별 인원과 채용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 등이 기록된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7.29>

② 계약직원의 채용인원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지구별 업무의 여건에 따라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예비합격자 명부를 5배수 범위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및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04.6.9. 20.7.29>

제9조(근로계약기간) ① 계약직원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공사의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06.9.15., 개정 06.10.13, 07.1.29, 07.10.24, 20.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 및 제1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주 계약직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비상주 계약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은 1년 단위로 하며, 총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 및 해당사업의 종료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7.29>

제10조(근로계약서) ① 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잔여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채용 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주 계약직원) ① 사장은 공사 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특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상주 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비상주 계약직원의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은 상주 계약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7.29>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원에게 다음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개정 20.7.29>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 사유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령 개정 또는 공사 사정상 계약직 운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근로계약서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 사장은 계약직원에게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만료 1개월 이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원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간 이후에 사직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신분변경의 제한)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서상의 당해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야 하며, 일반직 직원으로 전직할 수 없다. <개정 05.8.18, 07.10.24>

제 3 장 보수 및 퇴직금

제15조(보수결정) ① 계약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직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을 평가하여 직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일반계약직의 보수는 운영부서장이 결정한다. <개정 04.6.9, 20.7.29, 24.1.31.>

② 계약직원의 보수계약기간은 “별지 제1호 및 제

1-1호” 서식인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06.10.13>

③ 계약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12회로 나누어 매월 22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일급 제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가족수당은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7.29, 22.6.3>

제15조의2(직무평가위원회) 직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4.1.31>

제16조(여비 및 체재비 지급) ① 계약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06.9.15., 06.10.13>

1. <삭제 07.10.24>
2. <삭제 07.10.24>
3. 특급, 가급 - 3급 상당 <개정 07.10.24>
4. 고급, 나급이하 - 4급 상당 <개정 07.10.24>
5. <삭제 06.10.13>

제17조(퇴직금) 계약직원의 퇴직금 기준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근무실적평가 및 복무 등

제18조(근무실적의 평가) ① 사장은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와 보수액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근무실적평가 방법과 시기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근무평가시행세칙에 의한다.

1. <삭제 03.10.15>
2. <삭제 03.10.15>

제19조(복무 등) ①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정 등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사부서장은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운용 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04.6.9>

③ 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02. 12. 9>

제1조(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 제1조 시행일로부터 전문직관리시행세칙 및 공사감독계약직관리시행세칙으로 적용받던 사항은 이 세칙으로 적용받는다.

부 칙<03. 10. 15>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6. 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 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8. 1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4. 1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9. 1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0. 1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 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10. 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3.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6. 24>

이 세칙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8. 26>

이 세칙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6. 1>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6. 17>

이 세칙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7. 29>

이 세칙은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6. 3>

이 세칙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 별지 제1호는 신
규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제6조 관련)】 <개정 03.4.14, 04.11.8, 06.4.10, 06.9.15, 15.8.26, 19.6.17, 20.7.29>

채용 자격 기준

1. 공사감독계약직

가.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7.29>

나. <삭제 20.7.29>

2. 보상전문계약직 <개정 04.11.8>

등 급	응시자격(학력 및 경력사항)
특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6급이상으로 1년이상 공영개발사업등 용지보상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기관에서 과장급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용지보상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고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7급이상으로 3년이상, 9급으로 5년이상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이상의 직급으로 2년이상 용지보상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3. 일반전문계약직 <개정 09.3.27, 19.6.17>

구 분	자 격 기 준
“가” 등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나” 등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등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등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등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용지분양전문계약직 <신설 06.4.10>

구 분	등 급	응시자격(학력 및 경력사항)
용지 분양	특 급	- 공무원 6급이상으로 1년이상 공영개발사업등 용지분양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용지분양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고 급	- 공무원 7급이상으로 3년이상, 9급으로 5년이상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분양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이상 용지분양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자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삭제 07.10.24>

6. 일반계약직 <신설 20.7.29>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	- 해당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제15조 관련)】 <개정 16.6.1, 20.7.29, 24.1.31.>

근로계약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직관리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갑” 이라 하고, 계약직원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을)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생 년 월 일 :

제2조(근무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 (해당 근무지 주소)

제3조(담당업무) “담당업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4조(계약기간) 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인 해당사업의 기간단축, 중단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 된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통보한 종료일에 “갑” 과 “을” 의 모든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③ 공사에 대한 기여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을” 은 “갑” 에게 계약기간 연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채용) 요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신분) : 0000계약직 (급)

제6조(소정근로시간) :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제7조(근무일/휴일) 월 ~ 금요일 / 토·일요일 등 공사 취업규정이 정하는 휴일

제8조(보수액)

① 기본연봉 : ₩

② 부가급여 :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지급방법) ① 연봉을 12회로 나누어 매월 22일 지급한다.

제10조(연봉산정기준) 연봉은 공사 계약직관리세칙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 이 공사 본 세칙 제1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12조(복무) “을” 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 이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공사 취업규정에 의거 근무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타업무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 공사승계) “을” 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 이 승계한다.

제14조(기타 채용조건) ① “을” 은 계약직관리세칙 및 공사의 제반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 은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해석) 이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인)

“을” ① 주 소 :

② 성 명 : (인)

③ 생 년 월 일 :

【별지 제1-1호 서식(제15조 관련)】 <신설 06.10.13, 삭제 07.10.24>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7.29>

채용 계획서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18.7.1 ~'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채용절차 (기간제에 한정)	○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